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1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김평남 의원 외 20명
- 나. 제 안 일 : 2019년 3월 27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3월 29일
- 라. 상 정 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평남 의원)

### 가. 제안 이유

- 현재 서울시 산하 발주부서가 물품제조·구매 또는 공사에 적합한 특정 기술(특정제품·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는 등 특정기술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불합리와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기술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2)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를 정의함(안 제2조).
- 3)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가)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 (1)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 (2)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 나)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 (1)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 (2)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 4) 시장으로 하여금 발주부서가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함(안 제4조).
- 5)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특정기술 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과반으로 구성

- 다) 위원장과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자격기준 규정
- 6)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가)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 최종 선정
  - 나)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실사 가능
  - 다)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7)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 의뢰토록 함(안 제7조).
- 8) 위원회는 기술심사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해당 공법의 개발자나 보유자 그리고 해당 공사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9)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10)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1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 12) 참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둠(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19.4.3.~2019.4.10.) 결과 :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행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 “특정제품”이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발주시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함.
-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하고, 외부위원의 위촉 규정과 자격요건, 심사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여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구성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변경 전(규칙)	변경 후(조례안)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명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사항	- 5~7명, 내부위원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5~7명, 내부/외부위원 구성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 필요시 현장실사 - 회의록, 의결서 등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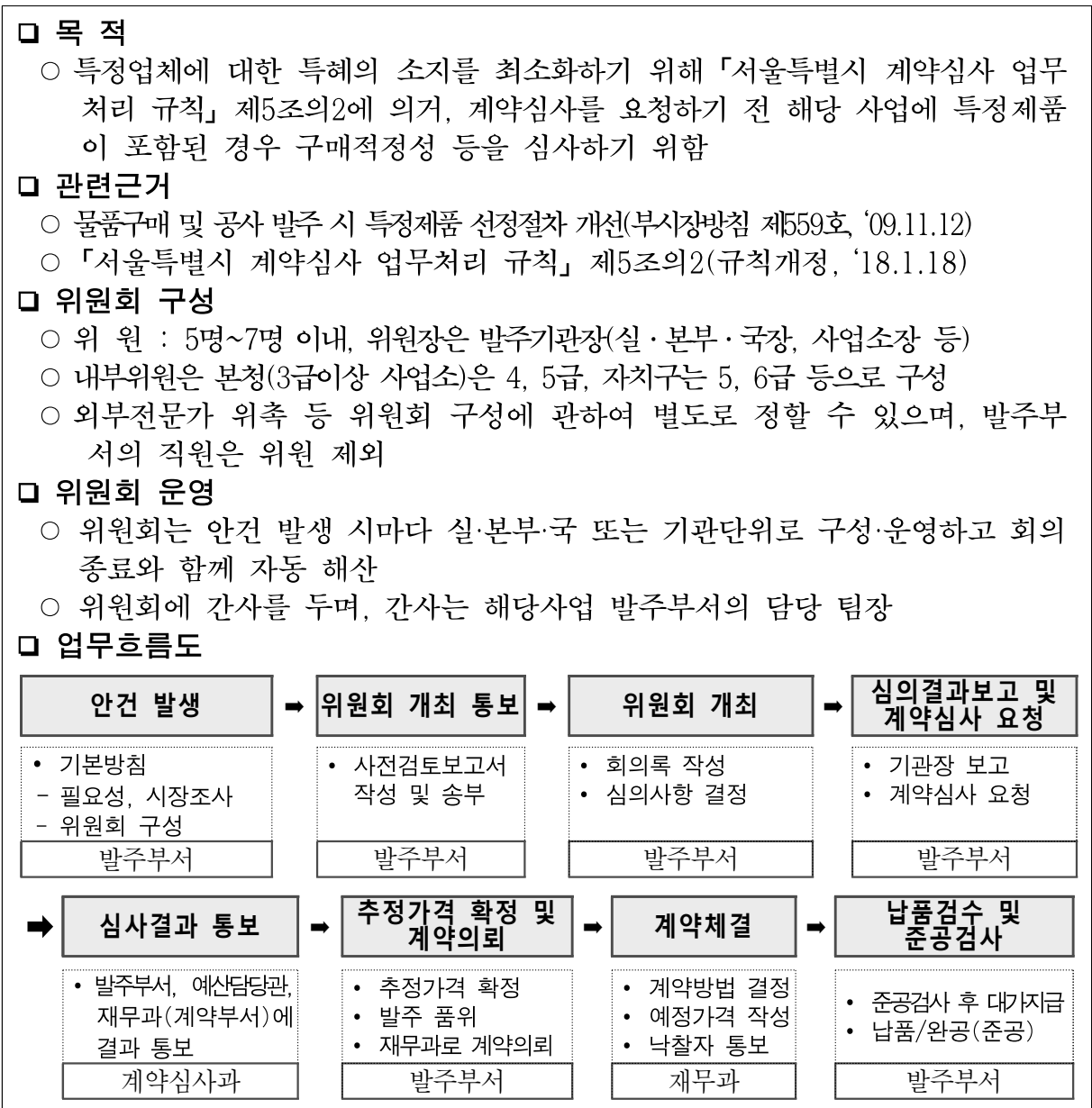
- 특정제품 선정심사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사용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특정 기술(공법)이나 제품이 포함된 경우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방침(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절차 개선)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현행 규칙에 담아 운영해 오고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계약심사와 관련한 사안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없으며, 특정기술(제품)선정 위원회 운영(규칙)은 서울시가 유일함.

- 현행 심사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발주부서인 실·본부·국 또는 기관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고 있으며, 5명부터 7명 이내에 실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4, 5급(자치구는 5, 6급) 등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40건에 계약심사 요청누계금액은 3,982억원에 달하고 있음(참고자료 내역 참조).

※ 총 240건 3982억원 : 특정기술 136건 3,424억원, 특정제품 104건 558억원

〈 현행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요 〉



〈2018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운영건수	계약심사 요청금액
본 청	21	220
상수도사업본부	12	62
도시기반시설본부	8	1,240
소방재난본부	16	87
한강사업본부	2	277
사업소	50	382
자치구	82	829
투자/출연기관	49	885
<b>합 계</b>	<b>240</b>	<b>3,982</b>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합의제행정 기관과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특정 기술심사위원회’로 보완하여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특정제품심사와 관련한 계약심사의 운영 규모(연 240건, 약4천억원)가 상당한 반면, 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칙적으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위원의 자격이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비치,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에 대한 규정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9 추53 판결)에 비추어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제1절에 따라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를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그 밖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1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를 ‘계약심사’라고 정의하면서, 제6절 보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 2.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80페이지)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제6절 보칙 (93페이지)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법률자문 결과 2019.4.15.>

#### - 법률자문 요지

「지방계약법」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

※ 법률자문 회신: 설치가능1, 설치불가능2

#### - 자문회신1: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의 규정을 원용하여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 자문회신2: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 - 자문회신3: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함. 그러므로 이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만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됨.

##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발주부서 - 특정기술 - 재료원가 - 순공사원가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 심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 5천만원 초과</li> <li>▶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 1억원 초과</li> <li>▶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 2천만원 초과</li> <li>▶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li> </ul> - 심사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li> <li>▶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li> </ul>
제4조(시장의 책무)	-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며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계약심사 요청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심사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10억 초과 시 7명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 수 과반
제6조(위원회 기능)	- 특정기술의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심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 선정
제7조(선정심사의 의뢰)	-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 위원회에 의뢰 -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제8조(협조요청 등)	-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회의 내용 기록 - 현장실사의 경우 회의록 생략 가능
제11조(비밀준수)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제1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1) 제명, 목적, 정의, 심사 대상 및 범위(안 제명, 제1조, 제2조, 3조)

- 현행 규칙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제품”을 “특정기술”로 하여(안 제명), 발주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 있음.

### ※ 안 제2조제2호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 안 제명 및 정의 등 본 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 용어를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특정기술(공법) 심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특정기술 136건 3,424억원, 특정제품 104건 558억원)을 감안하여 “특정기술” 용어로 통일하였다고 보여 지나, 기존에 있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와 용어 사용에 혼동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 제명 및 각 조항에서 “특정 기술 제품”으로 하는 방안, 또는 현행 규칙에 있는 “특정제품”과 조례상 “특정기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재무국에서 특정기술심사는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의 체계에 따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규정을 현행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내용을 보완·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발주부서에 서울시 본청의 과 및 담당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를 종전 규칙과 같이 정의(제1호)하고 있고, 특정기술(제2호)·재료원가(제3호의)·순공사원가(제4호)의 정의를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 다루지 않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특정제품에 관한 정의는 담지 않았음.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심사 대상 범위를 특정기술(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 초과, 동일 특정공법의 공정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원 초과)과 물품제조·구매(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의 금액에 따른 분류기준을 종전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로 이미 선정한 신기술이나 이미 특정기술들 간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음.

##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13조)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규칙과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 비교는 다음과 같음.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현행 규칙	조례안
명칭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법령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법령
위원회 명 (안 제5조1항)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수 및 구성 (안 제5조제2항)	- 5~7명, 내부위원으로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5~7명, 내부/외부위원 구성 -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위원장 역할 (안 제5조제3항·제6항)	-	- 회의 총괄하되 평가·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필요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함.
위원회 심사 항목 (안제6조제1항)	-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 - 특정제품 선정 적정 여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특정	- 특정기술 필요여부 -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	현행 규칙	조례안
심사 실효성 제고 (안 6조제2항)	-	- 현장실사 -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협조요청 등 (안제8조)	-	- 특정기술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출석 요청, 자료제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회의록 등의 비치 (안 제10조)	-	- 발주부서 장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비치 의무 규정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시기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같은 사안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본 조항에서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규칙임.

< 계약심사 운영 관련 준용 규정 비교 >

본 제정안	수정의견
서울특별시규칙 준용	준용 규정 삭제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삭제) ----- ----- ----- -----.

- 안 제5조제2항제2호는 내부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내부위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자구(수준-준용)를 명확하게 하여 종전과 같이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였음.
- 안 제5조제3항 및 제6항은 위원장의 역할로 회의를 총괄하되 안전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실·본부·국장 등 기관장인 위원장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는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심사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의결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안 제8조는 특정기술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정기술에 대한 위원회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안 제9조는 발주부서 장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비치 및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사항을 직접 추가하거나,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기타 조례안의 내용 중 비밀준수(안 제11조), 수당(안 제12조)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조례의 완결성 및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설치 시 고려사항 중 필수규정 명시 여부(14쪽)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 이내 범위로 명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항 및 ②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또한, 재무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자문사항으로 ‘원가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어,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과 기능면에서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는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행정2부시장 직속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건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신기술 적용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부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계약심사 운영 관련 근거 규정 비교 >**

원가분석자문회의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안)
<p>「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본 제정안: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li> <li>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li> <li>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기술 필요여부</li> <li>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li> <li>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li> <li>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li> <li>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구조상 하위 체계인 서울특별시 규칙을 준용하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01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구조상 하위 체계인 서울특별시규칙을 준용하고자 하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발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_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발주부서의 장은 _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분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 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전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기술 필요여부
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